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본책 44p 91번 정답 번호 : 91	정답	91 ②	91 ② (모두 정답)
		수정 사유	시행처의 문제 이의제기 수용으로 인한 정답 변경
본책 44p 91번 해설 번호 : 91	해설	채권추심회사가 준수해야 할 채무변제 수령 및 사후관리 내용 - 채권추심회사가 채무 변제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 변제금을 채권추심 위임계약 등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채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 변제금을 수령하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정보제공·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등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가 준수해야 할 채무변제 수령 및 사후관리 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 제18조 제2항에서 “채권추심회사가 채무 변제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 변제금을 채권추심 위임계약 등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채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 변제금을 수령하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본 문제는 해당 요건이 누락되어 지문 부족으로 이의제기를 수용하여 모두 정답 처리되었다. -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정보제공·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등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수정 사유	시행처의 문제 이의제기 수용으로 인한 정답 변경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